

## 보도자료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를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 일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단식농성장 앞

◎ 기자회견 진행

사회 - 민선 /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발언1 - '노란봉투법'에 담긴 의미와 무게 (윤지선 / 손잡고 활동가)

발언2 -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호림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발언3 - 장애인들이 노조법 개정 투쟁에 함께 하는 이유  
(서기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발언4 -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 맞서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발언5 -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단식농성자 발언  
(유최안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헌청지회 부지회장)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회는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라.

노동자와 ‘전쟁’을 벌이기에만 여념 없는 정부다. 빼앗긴 임금을 되찾기 위한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투쟁에 공권력 투입 의지만 보이더니, 안전운임제로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는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겁박하고 있다. 탄압의 이유로 법을 운운하며 불법 딱지를 붙이지만, 저들이 내세우는 법의 잣대가 우리의 존엄과 권리를 가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3권 보장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며 억압하는 수단으로 작동 되어 왔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조법이 제자리를 찾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지난 20년 비정규직은 급증했고 복잡한 노동형태 변화 속에 노동자임에도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이들은 계속 늘어났다. 이들의 노동조건 개선 요구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제 받아왔다. 2조 정의 조항에서 협소하게 노동자와 사용자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라진 현실에 맞게 법을 바꾸어야 할 책임이 입법기관인 국회에 있지만, 이를 방치하고 ‘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는 식으로 책임을 저버려왔다.

목숨을 건 투쟁이 끝나도 손배가압류로 노동자의 삶을 혼드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이 19대, 20대 국회 모두 발의되었지만 8년 동안 논의는 단 한 번뿐, 거둬 폐기되었다. 3조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조항은 노조법이 규율하는 모든 기준을 통과해 ‘불법파업’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현실에서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대화가 먼저’라며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을 비난해왔다. 손쉽게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며 헌법상 노동3권을 봉쇄하는 법의 문제는 외면해왔다.

국회가 직무유기해 온 시간은 술한 사업장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해 소송으로 보내야 했던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투쟁 이후에도 삶을 나락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문제에서 서로를 지키기 위한 분투를 멈출 수 없던 고통의 시간이었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라는 상식조차 세우지 못하고, 노동

자의 권리를 지킬 권리가 유예되는 시간을 우리는 더 이상 참고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노조법 개정 요구에 법안 논의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경영권,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기업의 목소리만을 대변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법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치권의 문체와 한계에 또다시 우리의 권리가 제한되고 유보될 수 없다. 지금 이 곳에서 곡기를 끊고 먼저 노조법 개정 투쟁에 나선 이들과 함께,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기 위한 투쟁으로 국회에 촉구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하라.

2022년 12월 7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아카이브,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들, 평화민주인권교육 인,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성소수자부모모임, 손잡고, 인권연구소 창, 인권운동공간 활, 인천인권영화제,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발언1. ‘노란봉투법’에 담긴 의미와 무게 \_ 윤지선 / 손잡고 활동가>

노란봉투캠페인이 시작된 지 9년이 되어갑니다. 왜 노란봉투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해고통지서가 담겨진 노란봉투가 그 이전에는 부모님이 받아오던 희망의 월급봉투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보자, 노란봉투의 출발입니다.

시작이 되었던 시민 배춘환 씨의 편지에는 이런 글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무너지지 말고 힘을 내주세요. 비록 적은 돈이지만 손배소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9만9999명이 함께 나서 주길 바랍니다“

과업에 무조건 불법 딱지가 붙는 세상에 아이들을 살게 할 수 없다는 시민이 출발한 캠페인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그런 노란봉투법의 이름에 정부여당과 보수언론이 다시 ‘불법’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버리자는 일부 야당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캠페인을 함께한 손잡고와 시민들은 이 이름을 버릴 수 없습니다. 힘있는 권력가가, 돈있는 자본이, 당신들이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이 되어버리는 이 ‘절망’을 지금도 우리는 희망으로 바꾸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립니다. 다들 잘 안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8년 중 국회 논의가 가장 뜨겁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논의는 가장 뜨거운데, 노동권이 불법이되는 잘못을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는 아무 준비가 되어있지 않아 보입니다.

불법이니 손해배상 하는 거라는 이 오래된 경영자집단의 주장에 정부와 여당이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잡고가 소송기록 아카이브를 만든 것입니다. 실제 판결을 뒤져보았습니다. 실상은 ‘불법’이라는 사측의 주장만으로 소송이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원고가 100%이긴 건 197건 중 11건에 불과합니다. 5%남짓입니다.

정부여당은 나중에 노동자들이 옳았으면 합법이었다는 게 밝혀지지 않냐고 합니다. 평균 1심까지의 소송기간이 2년2개월, 최장 7년이 걸렸습니다. 회사가 항소

하면 13년이 흘러도 끝나지 않는 게 손배소송입니다.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집행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집행할 의지가 있다면 470억원같은 살아서 벌 수도 없는 금액은 청구하지 않았겠지요.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노동현장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시대 효수와 같다’ 본보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노동권을 행사하면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어도, 해고자가 복직이 되어도 대대손손 갚아도 못갚을 빚을 지게 될 거라는 걸 보여 주는 겁니다.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2019년 손잡고가 조사한 노동자 236명 실태조사결과, 90%이상의 손배를 경험한 노동자들이 동료가 노조를 탈퇴하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경험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매우 안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곧 있으면 최강서 열사의 기일입니다. 한진중공업 158억원 손배소를 알리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의 유서에 158억원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손배소의 실체가 있습니다.

“지회로 돌아오세요. 동지들 여지껏 어떻게 지켜낸 민주노조입니까?? 꼭 돌아와서 승리해주십시오”

노동권은 단결권부터 출발합니다. 노동자 손배소는 이 단결권부터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는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바로잡자는 것이 어렵습니까?

경총,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와 직장갑질119, 3대 여론기관이 직장인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결과는 상반됩니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원청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개선에 90% 이상이 공감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담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취지에도 10명 중 8~9명이 공감했습니다.“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지켜보겠습니다. 국회의원 누가 또다시 경영자집단의 주장을 앞세워 국민을 등지고 있는지 함께 똑똑히 지켜봅시다.

**<발언2.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조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  
\_호림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상임활동가>**

7년 만에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차별없이 단결하고, 교섭하고, 행동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억대의 손배소와 가압류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자본의 행태를 막아내자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백억의 손배가압류를 무기처럼 휘두르는 현실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모든 노동자가 자신이 일하는 공간에서 노동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나서지 못한다면, 일터에서의 안전과 존엄, 모든 이들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 모든 이들의 존엄하게 평등할 수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과 노동의 세계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일터는 대다수의 노동하는 시민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이 사회에서 가장 차별이 만연한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20년 한 조사에 따르면 참여자 열명 중 일곱명이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한 장소로 직장을 꼽았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이주노동자라고, 여성이라고, 나이가 적거나 많다고, 장애가 있다고, 성소수자라고... 일터는 수 많은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이 만연한 공간입니다. 보다 취약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에게 더 낮은 임금을, 더 위험한 일을 부여하고,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를 지워버립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필요합니다. 일터에서 차별없이, 안전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일할 권리, 노동자가 단결해서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가 지켜져야, 우리는 차별없는 사회, 안전한 사회,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은 억압과 배제,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는 목소리를 낼 공간을 확장하고,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싸우는 모든 이들이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해야하는 투쟁입니다.

국회가 조속히 노란봉투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행동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노란봉투법 있는 새해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발언3. 장애인들이 노조법 개정 투쟁에 함께 하는 이유\_서기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서기현입니다. 전장연도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투쟁에 함께 합니다. 2조의 경우 사용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고용과 노동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지금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각 개별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지원사 업무 지침을 누가 작성하고 있냐면 각 개별 기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침을 내려서 합니다. 개별 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단가 조정, 근무 환경 모든 것에서 보건복지부가 하달하는 것으로 다 진행됩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에서 각 개별기관과 소송을 진행하고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책임이 있지만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는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노조법 개정하여 정부가 실질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노조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도록 노조법 개정을 함께 촉구합니다. 장애인도 일하면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데 제약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자체들이 하는데요, 이것의 원청은 서울시이고 노동부입니다. 우리 당사자들도 열심히 투쟁해서 노동조합할 권리를 반드시 찾겠습니다. 전장연도 노조법 개정 투쟁 적극 지지하고 연대해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투쟁!

<발언4. ‘기업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리에 맞서\_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허은실 시인의 시, <충주휴게소>의 한구절입니다.

...

고속도로엔 안개 자욱하고  
달려도 당겨도 거리는 줄지가 않는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추월당한 것 같아 삶으로부터  
그냥 절벽으로 핸들을 꺾고 싶었어

...

‘그냥 절벽으로 핸들을 꺾고 싶었어’, 이 구절에서 가슴이 짝 막혔습니다. 이 시가 표현한 것처럼, 노동 하는 사람이 ‘절벽으로 핸들을 꺾고 싶어지게’ 만드는 체제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여기 우리는 ‘절벽으로 핸들을 꺾고 싶지 않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도로, 건물, 철도, 교육, 돌봄, 의료 등 우리 삶을 가능케 하는 모든 것을 공동의 작업장이자 일터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동자를 둘러싼 사회환경을 감시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을 요구하며, 권력이 제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시민의 책임이자 도리로서 여기 모였습니다.

재산을 독점하고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세력은 ‘왜 내 맘대로 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핸들을 잡았다고 내 맘대로 운전하면 됩니까? 어린이를 비롯한 노약자가 앞에 있는지 주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호등에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제한속도 등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재산권은 사회정의, 사회복지, 경제민주주의와 함께 가야한다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의 약속 아닙니까?

그들은 핸들을 함부로 꺾으면 안된다는 것이 재산권의 형성과 발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들은 ‘내 재산만 지켜달라’ 말하지만, 여기 모인 우리는 상호연결과 상호의존과 공유 속에서 재산을 생각합니다.

재산이란 무엇입니까? 재산은 어디까지나 사회 속에서 가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소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사회의 공동체의 법에 의해 소유자가 됩니다. 서로간의 재산을 규제하기 위해 국가는 법을 만들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합니까? 사회구성원의 정의로운 관계를 보장하는 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권적인 강자가 다른 쪽을 관계에서 무시하고 지워버릴 수 있는 그런 법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큰 잘못입니다.

그 어떤 재산에 앞서 사회의 구성원은 누구나 사회 안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고 생계비를 벌 수 없는 사람에게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은 사회가 그들을 도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 모든 구성원을 부양하기에 기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 사이에서 마땅하고 정당한 것입니다. 사람 관계에서 마땅하고 정당하게 행위해야 하는 것을 입법화해온 것이 인권과 국가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고 강자의 특권을 보장하는 데 치우친 법은 비판과 저항을 받아 마땅합니다.



역사적으로 재산권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맥락에서 출발했고, 그 뿌리는 인간의 몸에 대한 권리, 생존을 도모할 권리입니다. 같은 뿌리에서 자랐으나, 큰 권력을 엮은 재산은 타인과 사회의 생존을 위협하며 배타적으로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쉽게 변질되곤 했습니다. 재산의 타락에 대한 방부제로 등장한 것이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단속되지 않은 재산권이 엄청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아동노동착취도 불사하고, 노동자가 잠도 못자고 밥도 못먹고 무제한의 과로 경쟁을 벌여야만 생계를 도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요하는 기업 활동은 자유롭지도 평등하지도 못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신호탄으로 보편적인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사회보장권 등이 함께 등장했습니다. 우리 삶에 필수적이고 공통적인 권리가, 공유하는 재산은 노동권과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절대의 원칙을 모든 구성원의 '살아갈 권리'로 바뀐 것이 노동권이고, 불리한 조건만 늘어놓고 도장찍게 만드는 강요를 '계약자유 원칙'이라 우기는 체제를 노동자의 단결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로 바뀐 것이 입헌주의와 인권의 역사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재산의 배타적인 사유화에 맞선 이유는 재산이란 것의 형성이 인간의 노동에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노동을 멈추면 난리가 납니다. 그것을 재산상의 손해라고 날뛰기 이전에, 왜 그런 노동을 무시하고 관계를 부인하려 했는지를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노동자로서의 지위 인정과 노동자의 결사와 단결의 자유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동은 개인으로 이뤄질 수 없고, 인간의 협업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는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집합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관계와 협업을 무시하는 비인간적인 노동시스템에 대해 집단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단체행동, 대표적으로 파업이 손해를 끼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그런 손해를 통해 민주주의 없는 시장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티내지 않고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큰 사고가 날 것을 알기에 미리 경고하는 것입니다. 당장 멈춤이 불편하다 해서 큰 사고의 위험을 안고 계속 가는 것이 과연 사회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회속의 관계는 권리에 의해 구성됩니다. 권리란 타자와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재산이 권리라는 것은 재산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가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재산권은 무한정이 아

나라 노동자와의 관계속에서, 전체 사회구성원과의 관계속에서 정해집니다. 노동자에게 절벽으로 핸들을 꺾고 싶게끔 만드는 관계를 조성하는, 잠못자고 허기지고 지친 노동자에게 안전을 맡기는 관계를 강요하는, 그런 재산권은 마땅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는 기본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한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는 헌법상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평등은 사용자와 노동자간의 평등이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업의 자유 침해이고, 재산권 침해란 사용자의 재산과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 합니다.

말이면 다 말이 되고, 권자를 붙이면 죄다 정당한 권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권리 주장을 ‘강도권’이라 이름붙인 적이 있습니다. 강도권이란 이런 것입니다. 강도가 제 목에 칼을 대고 지갑을 내놓으라 합니다. 저는 제 목숨이 소중하기에 제 지갑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강도는 제 지갑을 가져가서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들어있는 현금을 쓸 수 있고, 카드도 제가 정신차리고 신고하여 정지시키기 전까지는 맘대로 쓸 수 있습니다. 강도가 제 지갑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강도에게 내 지갑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는 절대 말해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강도는 제 지갑을 가져간 후에도 제 목숨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강도권’같은 일이 힘을 발휘하는 일이 많습니다.

타인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권력이 있다는 이유로 타인의 삶을 쥐락펴락하는 일이 합법적으로 벌어집니다. 강도에게 저항하는 사람에게는 불법이란 이름을 붙입니다. 저항하다가 강도에게 손해를 입히면 강도권을 침해했다고 사회적으로 큰 마이크를 든 쪽이 편들어줍니다. 강도권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재산권의 주장은 배타적인 사유화입니다. 타자의 삶을 남몰라라, 사회적으로 취약함과 불리함을 강요받는 사람들의 생존을 나몰라라, 전체 구성원의 실질적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재산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소위 재산이란 게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타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명령과 지휘권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회 속 구성원들의 노동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매일 공공교통을 이용하고, 헤아릴 수 없는 노동자의 필수노동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이분들의 존재가 저의 재산이고 인권의 역사가 말해주는 진정한 재산입니다.

세계노동기구, ILO의 창립선언문인 필라델피아 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부단한 진보에 필수적이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하게 한다.

이 말을 기억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발언5. 노조법2·3조 개정 촉구 단식농성자 발언\_유취안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히청지회 부지회장>**

반갑습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 유취안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기에 투쟁하는 하청노동자들에게 하퀴벌레라고 합니다. 하퀴벌레가 누구를 지정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지정하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임금, 반쪽짜리 권리, 반쪽짜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우리는 인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갈등과 혐오로 우리 사회는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우리 사회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이 비정규직이든 하청이든 플랫폼이든 특수고용이든 어떤 조건에 처해 있더라도 자신의 진짜 고용자와 교섭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투쟁,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이제는 입법으로 국회가 국민들에게 자신의 역할을 다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이 투쟁하며 이 사회에 물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이, 우리 노동하는 노동자가 노동조합법 2조와 3조를 개정한 노란봉투법으로 우리의 권리를 함께 세우고 지킵시다.